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대표번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 청약신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00~1171

■ 모델하우스 주소 및 연락처

주택유형	해당지역	개관지역	개관지역	규제지역
민영	경상남도 김해시 넥슨 아일 커뮤니티 센터 (2025.06.19.이전하기 예정 개관)	경상남도 김해시 넥슨 아일 커뮤니티 센터		비규제지역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6.19(금)	26.06.30(화)	26.07.01(수)	26.07.02(목)	26.07.08(화)	26.07.10(목) ~ 26.07.15(수)	26.07.18(토) ~ 26.07.20(월)

- 1순위 : 해당지역 청약통장 6개월 경과 & 청약금액 충족 &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내 재당첨 제한)
- 2순위 : 1순위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내 재당첨 제한 적용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내 재당첨 제한 적용

※ 타 APT 거주자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 사용횟수 제한 없이 청약신청자는 공급인원수 내 균등추첨 시 제한 적용

1 공통 유의사항

- 주거전용면적 초과 및 중복청약 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청약신청 시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중복청약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중복청약 적발 시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전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사용 :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및 납입 인정 회차 이상 충족 시 청약 가능하며, 청약통장 종류별 청약 가능 주택 및 면적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을 공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의 공급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 : 「주택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 그 주택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 「주택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공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금지 :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전매제한 및 당첨자발표일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분양 상담전용홈페이지(https://www.ipark.com/sinmunsentrum)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분양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분양상담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신 사항에 한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양상담전용홈페이지 운영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상담전용홈페이지 내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및 부정청약 등이 적발될 경우 청약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상담전용홈페이지 내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및 부정청약 등이 적발될 경우 청약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